| 의안번호 | 제 207 호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 결 | 2019년 월 일 |
| 연 월 일 | (제 회) |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발 의 자 | 김 영 주 의원 등 7인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19년 5월 31일 |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7

발의연월일: 2019년 5월 31일

발 의 자: 김영주, 이숙애, 서동학,

박성원, 이의영, 임기중

황규철의원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·보완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위탁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
- 나.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조제4항, 제5항)
- 다. '재위탁의 금지'→ '제3자 위탁 금지' 로 변경함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조직관리팀

라. 기 타

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-47호
2019. 5. 21. ~ 2019. 5. 28.(특이의견 없음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 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 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- 1.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,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
 - 2.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

3. 청소, 경비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18조의 제목 "(재위탁의 금지)"를 "(제3자 위탁 금지)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| 제2조(정의) |
|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u>〈신 설〉</u> | 5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을 |
| |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 |
| | 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 |
| | 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 |
| | 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|
| | 하는 것을 말한다. |
|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|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|
| ① (생 략) | ① (현행과 같음)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| ③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| |
|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 | |
| 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| |
| 다만,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| <단서 삭제> |
|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 | |
| <u> </u> 도. |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 |
| <u>〈신 설〉</u> | 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|
| |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 |
| | 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|
| |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 |
| | 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 |
| |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|
| |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|
| 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|
| | 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 |
| | 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 |
| | 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|
| | 를 받은 것으로 본다. |
| | 1.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|
| | <u>아니 하고, 위탁금액이 5천만원</u> |
| | 이하인 사무_ |
| | 2.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|
| | 3. 청소, 경비, 방호, 청사관리 |
| |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|
| 제18조(재위탁의 금지) (생 략) | 제18조(제3자 위탁 금지)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| |

관계 법 령

-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1.1.] [법률 제11212호, 2012.1.26. 타법개정]
- 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등)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[시행 2018.5.1.] [대통령령 제28846호, 2018.4.30. 타법개정]
- 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3. "민간위탁"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 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- 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-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 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 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 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.
- 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 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 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-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15조(사무편람)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 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 -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6조(처리 상황의 감사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있다.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재정수반요인: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중 "재위탁"에 관한 용어 정의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·보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수반되지 않음